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2013. 2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일러두기

본서에서 인용하는 ‘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법령’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본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발간한 자료로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목 차 -

I.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 / 1

1. 기존 투자시스템의 한계
2.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의의

II.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구조 / 3

1.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특징
2. 사업관리위탁계약 등 계약의 주요내용

III.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의 주요내용 / 6

1. 회사의 형태와 명칭 및 조직구조
2. 회사의 업무내용과 업무위탁 및 회계처리
3. 회사의 등록 및 해산
4. 회사의 감독·검사와 행정적 규제조치
5.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IV.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등록, 운영 및 해산절차 / 13

1.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및 등록
2.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운영
3.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산 및 해산

V. FAQ / 23

참고자료 / 29

1. 자산관리자 및 사업관리자 개요 양식
2. 문화산업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
3. 문화산업전문회사 샘플 정관
4. 문화산업전문회사 샘플 자산관리위탁계약서
5.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법률(문화산업진흥기본법)

1.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¹로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자금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부분과 자금관리 부분을 각기 다른 회사에 위탁 수행하며,

통상 프로젝트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특수목적회사 형태이다.

문화산업 분야는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 후 수익을 배분하는 프로젝트 투자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현행의 문화산업제작투자는 제작사에서 투자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형태로서 프로젝트 투자금과 제작사 자금이 분리되지 않아 투자자금 운용의 불투명성 등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투자의 투명성 확보 및 자금조달의 다양화, 제작사와 프로젝트의 분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및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위험 감소, 투자자금 사용의 투명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수익의 증가로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프로젝트의 독립성 보장,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투자하는 시스템 발달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해외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개척과 해외자본유치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¹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일반 법인과는 달리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Paper Company로서 프로젝트의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

1. 기존 투자시스템의 한계

기존 투자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자금 및 회계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이 다른 프로젝트 또는 회사 전체의 자금과 혼합되어 자금흐름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에 있어서 책임경영이 소홀히 될 소지가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 자금이 해당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의 용도로 전용될 수 위험이 있다.

또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수익금이 다른 프로젝트와 구분되어 투명하게 관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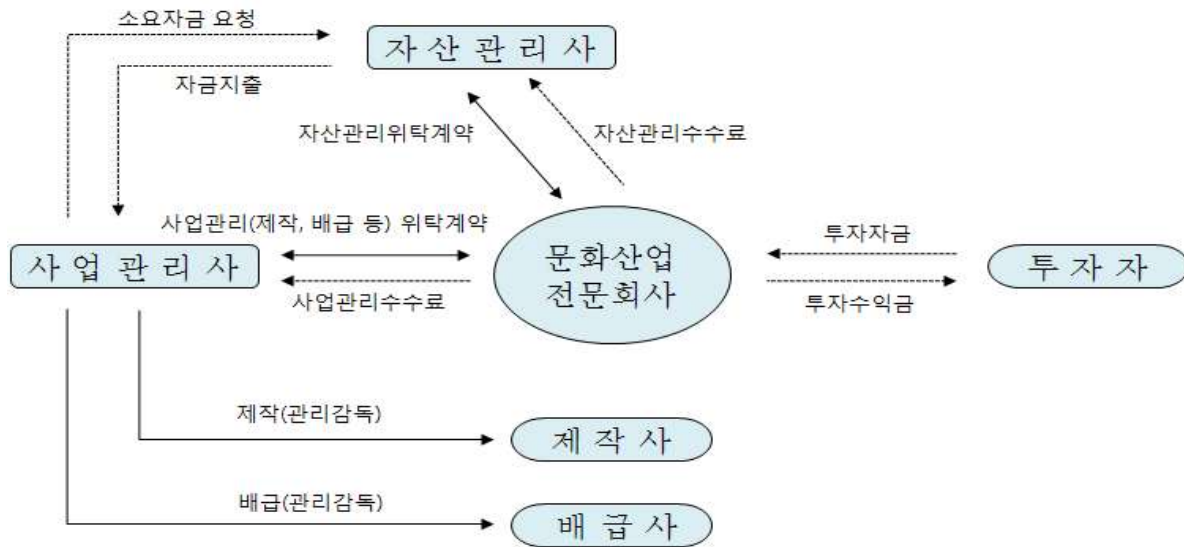
2.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 일반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참여를 원하는 프로젝트별로 사업의 총괄관리 및 운영, 자금의 조달 및 관리, 사업비의 집행, 투자성과의 산정 및 성과 분배 등 일련의 전 과정에 있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독립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기존 투자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성찰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자금 및 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일반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의의가 있다.

II.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구조

1.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특징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자금 및 회계가 명시적으로 분리된다.

이러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도적으로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므로 해당 사업은 물론 자금과 회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각 업무 영역별로 사업관리자, 자산관리자, 제작사 및 배급사, 투자자를 선정하여 이들과 업무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즉,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계약관계에 의해 상호 얽혀진 구조라고 볼 수 있다.

2. 사업관리위탁계약 등 계약의 주요내용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체결하는 주요 계약에는 사업관리 위탁계약, 자산관리 위탁계약, 투자 및 수익분배 계약, 제작 및 배급 계약 등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관리 위탁계약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으로서, 회사는 사업관리자에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총괄 및 운영관리, 자금의 조달과 성공적인 흥행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수익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위임한다.

사업관리자는 투자 계약 및 제작 위탁계약 등 회사의 각종 계약 체결 업무를 대행하며, 투자자금의 조달 업무,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마케팅에 대한 관리 업무, 자금집행에 대한 발의 및 결과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수익 분배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자산관리 위탁계약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으로서, 회사는 자산관리자에게 자금 및 자산, 인감의 보관과 관리에 관한 업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업무 및 기타 부대업무에 대한 책임을 위임하고,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 업무집행에 따라 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자산관리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자문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및 사업자등록, 해산 관련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으며 자금관리계좌 및 사용인감의 별도 관리, 자금집행의 승인과정 검토 및 최종 자금집행, 전표작성·부가가치세 신고 등 회계·세무업무의 처리, 결산 업무 및

정산서 작성 지원 업무, 계약서 등 각종 서류의 보관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투자 및 수익분배 계약

문화산업전문회사와 투자자간의 투자 및 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작품의 제작 및 수익발생을 위하여 총 제작비중 일정수준의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투자시기를 약정하며, 투자금 상환 및 수익분배의 방법과 시기, 최종 정산 및 감사절차 등에 대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약정한다.

투자자는 총 제작비 대비 투자금에 해당하는 손익분배 지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산 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익분배를 받게 되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손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배급 위탁계약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에 관한 업무를 제작사 및 배급사에게 위탁하는 계약으로서, 회사는 제작사 및 배급사에게 프로그램의 제작·납품과 배급을 의뢰하고 그 대가인 제작비 등을 소정의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이외에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프로그램 협찬/PPL 수익의 귀속 및 수익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작사 및 배급사는 제작 및 배급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소정의 제작비 등을 지급받고, 프로그램 제작·납품 및 배급 업무를 수행한다.

Ⅲ.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의 주요내용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형태와 명칭 및 조직구조

(1) 회사의 형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모두 가능하다.(법 제43조 및 제44조)

(2) 명칭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법 제48조 제1항)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48조 제2항)

☞ 이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됨.(법 제59조 제2항 3호)

(3) 조직구조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의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

사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일반적인 유한회사와는 달리 사원의 총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법 제45조)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6조)

회사의 관리기구인 이사는 상법에 따라 반드시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감사는 임의 기구이므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법 제47조)

☞ 상근 임직원이 없으므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본점은 통상 사업관리자의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2. 회사의 업무내용과 업무위탁 및 회계처리

(1) 업무내용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있다.(법 제49조 및 제47조 제1항)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업무내용

-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 상기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업무
- 그 밖에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대업무

(2) 업무의 위탁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이므로 회사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야 하는 바, 사업관리 업무는 사업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사업관리자에게, 자산관리 업무는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법 제51조)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및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됨.(법 제59조 제1항 2호)

한편,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는 동일인(법인 포함)이 될 수 없으며, 사업관리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

-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
-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50조)

☞ 현재 별도로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

3. 회사의 등록 및 해산

(1) 회사의 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등록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52조 및 법령 제46조의 2)

☞ 미등록 상태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됨.(법 제59조 제1항 1호 및 제2항 4호)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업무 등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음

(2) 회사의 변경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정관의 목적사업 등 당초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3) 회사의 해산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의 해산사유로 해산하며, 사업관리자는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53조)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해산 사유

-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 파산한 경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4. 회사의 감독·검사와 행정적 규제조치

(1) 감독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게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55조)

● 위반시 규제조치

-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정관변경 및 위탁계약의 변경요구 등)

(2) 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56조)

● 등록취소 사유

- 해산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 후 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과태료

문화산업전문회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법 제59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하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업무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자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등록기간(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자료 제출·보고·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5.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투자 모집 형태에 따라 공모형과 사모형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나누어진다.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 증권을 사모 이외의 방식으로 발행하며 금융기관 등 주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므로 사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비해 엄격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법 제56조의 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할 때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와 그 사업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검사 활동을 수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의 요건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또는 투자자 상호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IV.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 등록, 운영 및 해산절차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최초로 설립되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해산되기까지의 일련의 전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설립준비	근거법률	소요비용
○ 프로젝트 전체 기획안의 작성	-	기획비 등 운영경비
○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선정	법 51조	
○ 메인투자사 섭외 및 유치	-	

↓

회사의 설립	근거법률	소요비용
○ 정관의 작성	상법 543조-549조	설립등기비용 및 법무사 수수료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출자의 이행(설립자본금 납입)		
○ 법인설립등기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근거법률	소요비용
○ 사업관리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	법 51조	위탁수수료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등록	법 52조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5조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운영	근거법률	소요비용
○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자금의 조달	-	제작비 등 사업비
○ 제작 및 배급 위탁계약의 체결		
○ 제작비 청구 및 사업비 집행		
○ 제작관리 및 제작 회차별 중간정산		
○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법 등	VAT 부담 및 환급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산 및 해산	근거법률	소요비용
○ 완료 후 손익 정산 및 성과 분배	-	통상 운영경비
○ 잔여재산(저작권 등) 처분 및 분배		
○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법 51조의 2	법인세 등
○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상법 531조-538조	등기비용 및 법무사 수수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산 보고	법 53조	
○ 청산종결 등기	상법 540조,541조	

1.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및 등록

(1) 설립 전 준비활동

● 프로젝트 전체 기획안의 작성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은 프로젝트 전체 기획안을 작성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기획안에는 프로그램(작품)의 장르와 구성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고, 프로젝트의 전체 추진 일정, 제작비 등 전체 사업예산안, 투자자금의 조달계획, 사업의 성과 예상액 등 프로젝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선정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와의 위탁계약 체결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이므로 회사 설립 후 가능한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회사 설립 전에 설립 업무 등에 관여하게 된다.

● 메인투자사 섭외 및 유치

회사설립 전에 메인투자사를 섭외하여 유치하는 일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사실상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메인투자사가 유치되면 이후 다른 투자자의 유치활동이 탄력을 받게 되어 투자자금의 조달이 매우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설립 전에 메인투자사를 유치하지 못하고 회사설립 후의 과제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다.

(2) 회사의 설립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가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조직 구성도 단순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유한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관의 작성

회사설립 시 출자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43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자본금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소재지 등.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는 1인 이상이며, 감사는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출자의 이행(설립자본금의 납입)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립시 최소 자본금은 1천만원이다.

● 법인설립등기

출자 전액의 납입 등이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유한회사가 성립한다.

☞ 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절차는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실무적으로 진행한다.

(3)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 사업관리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체결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관할관청에 대한 등록 및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사업관리 및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원(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회사는 등록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업무는 통상 자산관리자가 수행하며, 등록 요건 및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요건

-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사업관리자가 법률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자산관리자가 법률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등록신청서류 중에 허위 또는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지 아니할 것

▶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회사의 상호, 형태 및 본점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정관의 목적사업
- 자본금
-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 첨부서류

- 정관 및 사업계획서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사본
- 사업관리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사원(주주)총회 승인 문서
- 사업관리자, 자산관리자, 문화산업전문회사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계획서에는 사원의 지분 보유 현황, 목적사업의 내용 및 추진 일정, 투자자금의 조달 계획,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사용에 대한 감독 계획, 사업이익의 분배 및 배당 계획 등이 기재되며, 사업관리자 등의 개요에는 대표자와 자본금 등 회사의 일반현황, 주요 사업실적 등이 포함됨.

☞ 기타 서류로서 사업/자산관리 위탁계약의 사원(주주)총회 승인 문서, 문화산업전문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업무는 통상 자산관리자가 수행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 | | |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 · 법인등기부 등본 |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 |

사업자등록 시 일선 세무서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경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2.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운영

●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자금의 조달

회사는 메인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와 투자 및 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투자시기에 투자자금을 조달 받는다.

투자자는 총 제작비 대비 투자금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로 손익분배에 대한 지분 비율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출자자와 사실상 동일한 성격 및 위상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작 및 배급 위탁계약의 체결

회사는 제작사 및 배급사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회차 별로 약정된 소정의 제작비 등을 지급한다.

● 제작비 청구 및 사업비 집행

프로그램 제작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제작비 등 회사의 사업비 집행이 본격화된다.

사업비 집행은 사원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예산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수정 결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자금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금집행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자금집행의 일반적인 절차

- 제작사 등으로부터 제작비 등 사업비 지급 청구서를 수령
- 사업관리자가 자금집행위원회에 세부 지출내역과 지출결의서를 제출
- 자금집행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 사업관리자가 자산관리자에게 제작비 등 사업비 지출을 통보
- 자산관리자가 승인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집행
- 자산관리자는 자금집행 후 자금집행 내역을 사업관리자에게 통보
- 사업관리자는 매월 자금집행 내역을 정리하여 자금집행위원회에 보고

☞ 자금집행에 대한 이중의 통제장치로서 OTP 보안카드에 대한 승인권한을 사업 관리자가 보유하기도 하며, 인터넷뱅킹 상에서의 자금집행 등록권한과 승인권한을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가 각각 분리하여 갖기도 함.

☞ 자금집행위원회는 사업관리자와 메인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산관리자가 옵저버로 참여하기도 함.

● 제작관리 및 제작 회차별 중간정산

사업관리자는 프로그램의 제작 일정 전반을 관리하며, 제작 회차별로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제작 회차별 중간정산은 제작사가 사업관리자에게 정산서류 및 지출증빙을 제출하면 사업관리자가 이를 자산관리자에게 송부하고, 자산관리자가 정산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하여 중간정산 리포트를 작성, 사업관리자 및 투자자 등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프로그램의 제작 단계에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비용 지출이 많으므로 법인세 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의 지급에 따른 원천세 신고납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문제가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발생한다. 매입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확정 신고 시 대부분 환급받게 되지만 환급기간까지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3.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산 및 해산

● 종영 후 손익 정산 및 성과 분배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저작권 등의 해외 유통 및 배급이 사실상 마무리되어 총 수익금이 잠정 확정되는 시점에서 프로젝트의 손익에 대한 최종정산 업무가 시작된다.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성과 산정 및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피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최종정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종정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잔여재산(저작권 등) 처분 및 분배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해당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해산이 예정된 회사이므로 저작권 등의 잔여재산을 처분하고 반드시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저작권 등 잔여재산은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방송사 또는 배급사 등에게 처분하며,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금은 투자자 등에게 추가로 분배하여야 한다.

●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회사의 손익에 대한 최종 정산결과,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해산등기 및 관할지방법원에 해산신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소정의 해산사유로 해산하며, 청산인을 선임하여 해산절차를 관장하도록 한다.(상법 제531조 내지 제538조)

청산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산등기와 함께 청산인선임등기를 한다.

청산인선입등기 후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및 자산목록을 첨부하여 회사 본점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신문지상에 채권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채권 신고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산 보고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산종결 등기

잔여재산 분배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고, 청산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상법 제540조)

V. FAQ

1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정관 및 사업계획서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사본
- 사업관리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사원(주주)총회 승인 문서
- 사업관리자, 자산관리자, 문화산업전문회사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계획서에는 사원의 지분 보유 현황, 목적사업의 내용 및 추진 일정, 투자자금의 조달 계획,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사용에 대한 감독 계획, 사업이익의 분배 및 배당 계획 등이 기재됨

☞ 정관 공증이 필요하고,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사본, 잔액증명 등)가 필요

☞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대표자와 자본금 등 회사의 일반현황과 주요 사업실적 등이 포함됨 (참고자료 참조)

2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시기는?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사업 중 의무등록 대상사업과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투자된 의무등록 대상프로젝트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됨
 - ☞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사업 중 의무등록 대상사업 : 사업 선정 후 2주 이내 등록신청
 - ☞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투자된 의무등록 대상 프로젝트 : 최초 투자시점 후 2주 이내 등록신청

3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신청서는 어디에 있는지?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신청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서식8에서 정하고 있음
 -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서식8

4 정관을 변경하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 정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정관이 변경되더라도 신청서상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변경등록 의무가 없음
- 다만, 정관 변경으로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 사업관리자의 명칭, 자산관리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5 변경등록 신청시 변경내역만 기재하면 되는지?

- 변경등록신청서상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기재하되, 변경항목은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함

6 변경등록 사항이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최종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록해도 되는지?

- 서로 다른 날짜에 발생한 변경등록 사유를 합건하여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초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

7 문화산업전문회사 정기실태조사는 언제 하는지?

- 문화산업전문회사 정기실태조사 실시 연 1회 이상, 3/4분기 중 실시
 - 조사대상 : 문화부 등록된 문전사 (해산회사 제외)
 - 법적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5조제2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5조(감독·검사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점검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회계법인
- 점검내용 : 자금 입출금 현황, 사업진행 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운영 전반

8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영업소 설치와 직원고용에 관해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음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음

9 자본금 관련 행정지도한 사례는?

- 자본금의 타인 대여 행정지도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본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해당 대여 행위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 자본금 실제출자자와 등기부등본 기재 출자자 불일치 행정지도
 - 자본금 실제출자자와 등기부등본 기재 출자자가 일치 하도록 행정지도

10 자산관리 관련 행정지도한 사례는?

- 자산관리를 부적절하여 행정지도 사례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지출비용의 회계기장하는 수준으로만 관리
 - 사업관리자가 문전사의 자금을 한 번에 모두 인출 한 후 지출을 해야 할 경우 문전사 통장으로 재입금하여 지출한 경우
 - 기타 타 프로젝트와의 자금 혼용

11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음
- 등록현황 확인방법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 콘텐츠지식 → 산업동향 → 국내산업동향 → 등록현황

12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법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관련 법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43조 ~ 제56조 등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 제46조의 2 ~ 제47조 등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2 등

13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취소사유 무엇인지?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에 관해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 에서 정하고 있음
 - ‘해산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후 이 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에 해당함
 - 등록취소에 해당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후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기회부여 후 등록취소처분

14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세재혜택은 무엇인지?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혜택(이중과세 조정)을 주고 있음
- 법적근거 : 법인세법 제51조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 배제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따라서 설립등기 시에 지방세인 등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일반회사의 경우 그 설립지역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과밀화 억제를 목적으로 통상 등록세의 3배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명목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중과세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참고자료

1. 자산관리자 및 사업관리자 개요 양식
2. 문화산업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
3. 문화산업전문회사 샘플 정관
4. 문화산업전문회사 샘플 자산관리위탁계약서
5.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법률(문화산업진흥기본법)

자산관리자 및 사업관리자 개요 양식

< 자산관리자 개요 >

1. 자산관리자 및 대표자
 - 회사명 (대표자 :)
 - 담당자 : 성명, 핸드폰 등 연락처

2. 설립일(등기일 기준)

3. 사업자 번호 및 법인 번호
 - 사업자번호 :
 - 법인번호 :

4. 사업장 주소 :

5. 자본금 규모 :

6. 조직구성(전체조직과 자산관리를 담당할 부서 등 명시)

7. 주요연혁

8. 문화산업분야와 관련된 사업 실적

9.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후 회계 관리, 자금집행 등 관리감독 계획

< 사업관리자 개요 >

1. 사업관리자

- 대표자 :
- 담당자 : 성명, 핸드폰 등 연락처

2. 설립일(등기일 기준)

3. 사업자 번호 및 법인 번호

- 사업자번호 :
- 법인번호 :

4. 사업장 주소 :

5. 자본금 규모 :

6. 조직구성(전체조직과 사업관리를 담당할 부서 등 명시)

7. 주요사업

8. 주요연혁

9. 문화산업분야와 관련된 그 동안의 사업 실적

10.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후 활동계획 및 그에 대한 보고계획

문화산업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신청인	상 호	회사의 형태	
	본점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본금			
사업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자산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증 분실 사유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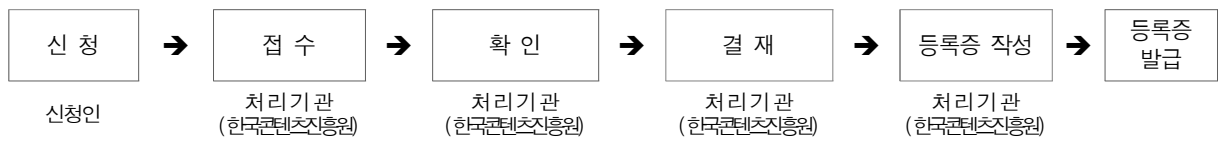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1부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증 분 실사유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샘플 (정관)

○○○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당 회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로서 드라마 ○○○와 관련한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2.
3. 그 밖에 제1호에서 제2호까지 업무에 부수하는 사업일체

제 3 조 (본점소재지) :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며, 본점 이외에는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제 4 조 (자본의 총액) : 당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 일천만원으로 한다.

제 2 장 사원과 출자

제 5 조 (출자의 좌수 및 1 좌의 금액) : 당 회사의 자본은 이를 2,000 좌로 나누고, 1 좌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6 조 (사원의 성명 및 출자좌수) : 사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그 출자 좌수는 별지 기재와 같다.

제 7 조 (지분의 양도) : ① 사원이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제 3 장 사 원 총 회

제 8 조 (사원총회) : 당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개최 할 수 있다.

제 9 조 (사원총회의 소집) : ① 사원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 1주 전에 사원총회일과 회의목적사항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결의방법) :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결의한다.

제 11 조 (결의권) : 각 사원은 출자 1 좌에 대하여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12 조 (의 장) :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3 조 (임 원) : 당 회사의 이사는 0인 이상으로 하며, 감사는 1인을 둘수있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 : ① 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 초대 임원은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한다.

③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대표이사) : 당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 단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6조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 당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 결정하고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 17조 (임기)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사원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18조 (보선) : 이사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그 법정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이사회) : 당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제 20 조 (소집권자와 의장) :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중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 21 조 (결의)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2 조 (보수 및 퇴직금) : ①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지급은 별도로 정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계 산

제 23 조 (영업년도) : 당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재무제표 등) : ① 대표이사는 매 영업년도 종료시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감사의 확인 후 정기사원총회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각사원에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여 정기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영업보고서는 정기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전①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는 전①항에 기재된 서류 및 전③항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사원총회일 1주일 전부터 회사의 존속기간 동안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이사는 정기사원총회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각사원에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여 정기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영업보고서는 정기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전①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전①항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사원총회일 1주일 전부터 회사의 존속기간 동안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이익배당) : 이익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 26 조 (장부의 열람) : 당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 장 해 산

제 27 조 (해산사유) : 당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 ① 존립기간의 만료 그밖에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 ③ 파산한 때
-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제 28 조 (청산인) : 당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부 칙

1. 이 정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영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규정외 사항)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상법 기타 법령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이와 같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3년 ○월 ○일

○○○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유한회사 사원

(이하 전 사원이 기명날인함)

별지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출 자 좌 수 : X,000좌
주 소 :

사원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출 자 좌 수 : X,000좌
주 소 :

(샘플) 자산관리위탁계약서

000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000회계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자산관리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갑”은 000프로젝트(이하 “본건 프로젝트”라 한다.) 투자, 제작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0000(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의 사업관리자로서 본 계약을 승인한다.

다 음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갑”의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을”에게 위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본건 프로젝트 :
2. 사업관리자 : “본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자금의 조달과 성공적인 흥행을 위한 제작, 홍보, 마케팅 및 수익활동을 책임지는 회사로서 본 계약에서는 “000”을 의미한다.
3. 자산관리자 : “갑”의 자금, 자산, 인감의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업무 및 기타 부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본 계약에서는 “000”을 말한다.

4. 투자자 :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전사라 한다)와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영화로 인한 순수익에 대한 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5. 제작사 : 프로젝트를 직접 제작하는 회사로서, 본 계약에서는 “000”를 의미한다.

6. 자금관리계좌 :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가 협의하여 개설한 “문전사” 명의의 계좌로 본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입출금이 일어나는 계좌를 의미한다.

7. 정산서 : 프로젝트제작 이후 본건 영화로 인한 수익, 비용 및 손익을 계산하여 투자자에게 상환할 원금 및 이익을 산정하여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서식을 의미한다.

제 3 조(“갑”의 추가 계약)

본 계약과는 별도로 “갑”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갑” vs 사업관리자(“병”) : 사업관리위탁계약

제 4 조(업무의 위탁)

“갑”은 본건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금의 입출금 및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 5 조(통지 및 공고)

“을”은 본건 프로젝트의 투심위원회에게 “갑”의 자금흐름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중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투심위원회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심위원회에게 모사전송방식, E_MAIL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6 조(“을”의 업무 범위)

“을”의 업무 범위는 비정규 용역업무와 정규 관리업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용역 업무

- ① “갑”의 설립에 관한 사항의 자문
- ② “갑”의 사업자등록 신청 등 설립준비행위 지원
- ③ “갑”의 정산서 작성 업무 지원
- ④ “갑”의 청산과 관련된 업무

2. 정규관리업무

- ① “갑”의 자금관리업무
 - 자금집행의 승인과정 검토 및 집행 절차 수행
 - 정산결과에 따른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② “갑”의 회계업무 : 전표작성, 회계처리 및 결산 업무
- ③ “갑”의 세무업무
 -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원천세신고 등 각종 세금의 신고대행
- ④ 기타 일반적인 회사에 대한 자문업무

제 7 조(“갑”의 설립준비 및 사업자등록)

1. “갑”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 등 설립비용과 자금관리계좌 등 법인통장 개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은 “갑”의 비용으로 정산하며, 추후 정산시 총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관할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업무는 “을”이 수행한다. 신고업무에 소요되는

수입인지세등은 “갑”의 비용으로 한다.

3. “갑”의 사업장 소재지는 “을”과 “병”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 8 조(정산 업무)

1. 정산시기: “갑”과 투자자의 관련계약에 따른 최초 정산시기에 정산하기로 한다.
2. 정산에 포함되는 수입금액은 “갑”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총비용은 실제 지출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향후 지출이 예정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정산결과에 따른 투자원금 및 이익분배금의 지급은 “갑”의 정관의 규정 및 “갑”과 투자자가 체결한 계약을 토대로 한다.

제 9 조(자금관리업무)

“을”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으로부터 수탁 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관리하여야 한다.

1. 통장의 개설 및 보관

- ① “을”은 “갑”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갑”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병”과 협의하여 개설한다.
 - ② 본 계약에 있어서는 자금관리계좌는 _____은행(계좌번호 _____)을 이용하기로 한다. 추가계좌 개설이나 자금관리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 “병”이, 상호 합의해 개설 혹은 변경할 수 있다.
2. 자금을 집행하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정산시점에 총비용에 포함한다.

3. “을”이 자금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자(“병”)가 자산관리자(“을”)에게 자금인출 계획을 통보하고, 자산관리자가 인출한다.
4. 총제작비를 제외한 매월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의 지출(자산관리자, 사업관리자의 보수등)은 사전적(포괄적), 승인하에 자동이체 등으로 지출 할 수 있다.
5. 매출 발생이후 투자 정산금의 지급 역시 전 3항을 따른다.

제 10 조(회계업무)

1. “갑”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을”은 “갑”의 회계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을”은 XX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한다.

제 11 조(세무업무)

1. “을”은 “갑”의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기로 하며, “을”이 대행하는 “갑”의 세무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한다.
 - ① 분기별 부가가치세의 신고
 - ② 원천징수 및 신고
 - ③ 법인세 신고 및 주민세 신고
 - ④ 기타 세무처리 등
2. “을”은 세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갑”의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갑”의 설립일로부터 “갑”의 해산 및 청산하는 경우 그 완료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보관중인 “갑”의 자금, 자산, 인감 및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체를 “갑”에게 이전하고 종료에 따른 잔존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을”의 보수)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정규용역 업무에 대한 보수는 “갑”이 매 월 XXX원 (₩ XXX,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을”은 전1항에 의한 용역보수를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본 계약 체결후 비정규용역에 대한 보수로 XXX원 (₩ XXX, 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한다.
4. “본건 프로젝트”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감사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XXX원 (₩ XXX,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5. 1항과 4항의 총보수 합계가 총제작비의 1%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본 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년 후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본조 “을”의 보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비밀보장)

“을”은 본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갑”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제3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갑” 또는 “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15 조(계약당사자의 의무)

1. “병”은 “을”이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제공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2.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3.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성과와는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한다.
 - ① “갑”이 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 ② 투자의 완성 및 출시여부 및 작품성
 - ③ 투자프로젝트의 흥행 여부
 - ④ 투자금액 및 수입금액의 “갑”의 계좌로의 입금
 - ⑤ 투자프로젝트의 제작 및 마케팅 과정에서 거래처의 선정 및 계약내용

제 16 조(손해배상)

1. “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갑”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 17 조(계약의 해지)

1. 계약기간 중도에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 의사를 접수한 “갑” 또는 “을”은 동 계약해지의 의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2. “갑”은 “을”에게 다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때
- ②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당한 때
- ③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 또는 판결을 받은 때
- ④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 상태인 때
- ⑤ 합병, 영업양도 또는 계약이전명령으로 인하여 “을”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
- ⑥ “을”의 허위 또는 부정확한 보고 등 관리활동 태만으로 현저한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 ⑦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갑” 또는 “병”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3. “을”은 “갑”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〇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① 3개월 이상 자산관리자의 보수가 미지급되어 자산관리자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보관중인 “갑”의 자금, 자산, 인감 및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체를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고 해지에 따른 잔존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8 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조건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또는 일반상관계에 따른다.

제 19 조(계약변경 및 해석)

1. 본 계약의 내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갑”, “을”, “병”의 서면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과 “병”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0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기타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유사원인을 의미한다.

제 21 조(전속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간에 상호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전속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XX년 XX월 XX일

“갑”

“ 010 ”

“ 011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4조(회사의 형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5조(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6조(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2.6]

제50조(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4.28]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3.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③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는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등록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1. 정관의 목적사업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3. 사업관리자의 명칭
 4. 자산관리자의 명칭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5.25>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2.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제51조제1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3.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제51조제2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 ③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53조(해산)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4.28]

제55조(감독·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2.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9.2.6]

제56조(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④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로 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장 보칙 <개정 2009.2.6>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9.2.6]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5.25>

1.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자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5>

1. 거짓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자
 3. 제31조제8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5.25>

[전문개정 2009.2.6]